

2012-01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 주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 69만 개 창출 -

2012년 2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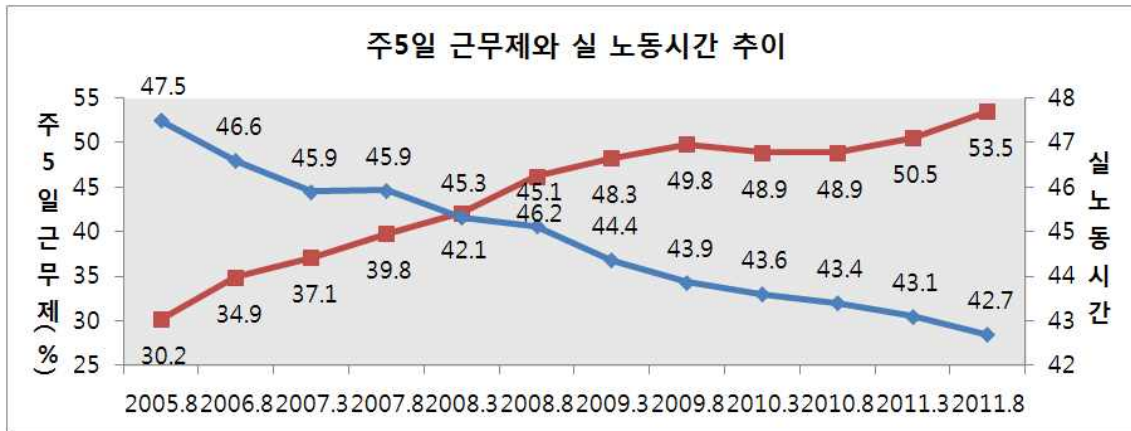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2층
전화:393-1457~9 팩스:393-4449 <http://klsi.org>

1. 주5일(40시간) 근무제 정착

○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노동시간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5년 8월에는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30.2%고, 실 노동시간은 주 47.5시간이었음. 2011년 8월에는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53.5%로 확대되고, 실 노동시간은 주 42.7시간으로 단축되었음.



○ 2011년 7월부터 주5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체 규모와 산업, 직업,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률이 크게 차이가 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일제가 사실상 100% 적용되지만, 100-299인은 83%, 30-99인은 65%, 10-29인은 54%, 5-9인은 33%, 5인 미만 사업장은 17%로 규모에 따른 격차가 뚜렷함.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수(천명)	9,374	584	983	2,145	2,251	1,460	1,950
비율(%)	53.5	17.4	33.0	54.0	64.8	82.5	99.3

- 공공행정과 금융보험업은 주5일제가 사실상 100% 적용되지만, 생산자서비스업은 72%, 제조업은 67%, 사회서비스업은 62%, 유통서비스업은 49%, 개인서비스업은 19%로 산업별 격차가 뚜렷함. 교육서비스업이 39%로 낮은 것은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업	(금융보험)	유통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
수(천명)	2,321	2,220	774	1,713	423	2,201	963	522
비율(%)	67.3	72.2	93.7	49.3	19.2	61.5	97.7	38.7

- 직업별로 사무직(79.5%), 관리직(70.3%), 전문가(62.3%)와 장치기계조작조립원(60.2%)은 주5일제 적용률이 높고, 판매직(39.8%)과 단순노무직(33.4%), 기능직(32.3%), 서비스직(31.4%)은 적용률이 낮음.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 계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수(천명)	267	2,405	2,994	495	580	12	518	1,123	980
비율(%)	70.3	62.3	79.5	31.4	39.8	19.4	32.3	60.2	33.4

- 고용형태별로도 정규직은 주5일제 적용률이 70.6%인데 비정규직은 36.1%로 차이가 큼.

o 주5일(40시간) 근무제 적용률을 높이려면, (1) 시행령을 개정해 주5일(40시간)제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함과 동시에, (3)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 법대로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게끔 강제해야 함.

2. 초과근로 제한

o 근로기준법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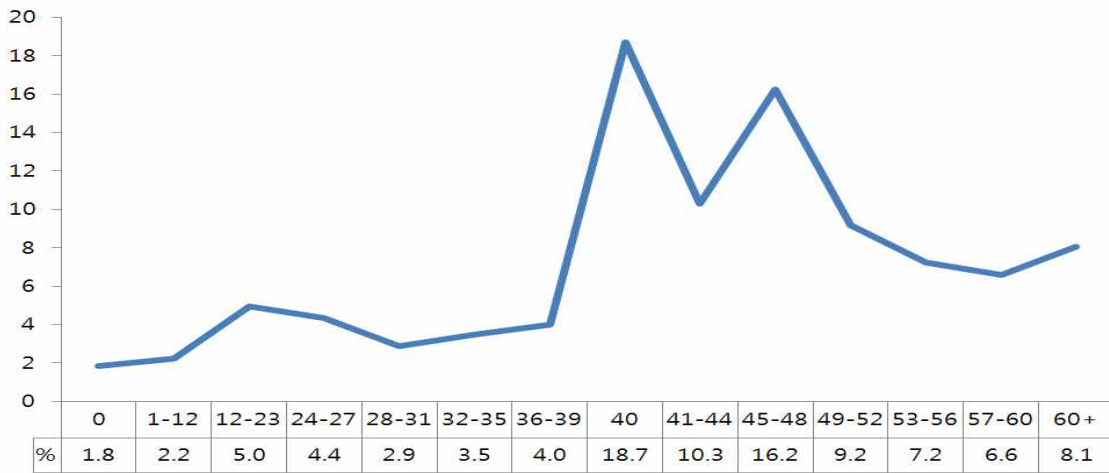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2011년 현재 380만 명(전체 노동자 1,740만 명의 21.8%)으로, 5명 중 1명꼴임.

- 유럽연합은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주48시간을 최장 노동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음. 2011년 현재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은 540만 명(전체 노동자의 31.0%)으로, 3명 중 1명꼴임.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1년,%)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관행화되어 있음.

- 10인 미만 사업장과 100~299인 사업장이 23~25%로 가장 많음.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수(천명)	3,804	804	729	836	671	411	346
비율(%)	21.9	24.4	24.6	21.2	19.5	23.3	17.4

-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은 운수업(36.9%)과 숙박음식점업(36.7%)에 가장 많음. 제조업 95만 명, 도소매업 52만 명, 숙박음식점업 40만 명 등 3개 산업에 절반 가량 모여 있음.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서비 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 스업
수(천명)	953	288	83	271	519	263	403	214
비율(%)	27.2	21.4	26.5	26.0	24.7	36.9	36.7	30.1

○ 지금까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킨 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왔음.

- 노동부 해석: 휴일근로는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한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2000.9.19. 근기 68207-2855, 2002.10.28. 근기 68207-3125)

-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근로기준법 주해(III)』: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휴일근로시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음.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接客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일소하려면, (1)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 해석을 폐기하고, (2)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를 개정하고, (3)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 주52시간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법대로 엄격히 단속해야 함. 또한 (4)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유럽연합처럼 초과근로 한도를 주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75만개 창출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자는 380만 명이고, 이들이 수행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주당 3,600만 시간임. 이를 52시간으로 나누면 69만 명을 새로이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이 때 노동시간은 주 43.1시간(연 2,247시간)에서 주 41.5시간(연2,164시간)으로 주 1.6시간(연 83시간) 단축됨.

○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유럽연합처럼 초과근로 한도를 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115만 개 창출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540만 명이고, 이들이 수행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주당 5,495만 시간임. 이를 48시간으로 나누면 115만 명을 새로이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이 때 노동시간은 주 43.1시간(연 2,247시간)에서 주 40.4시간(연 2,107시간)으로 주 2.7시간(연 140시간) 단축됨.

<표> 초과근로 제한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탈법적 초과근로			초과근로 일소 시 변화	
	수 (천명)	비율 (%)	초과근로 시간합계 (천시간)	추가고용 (천명)	노동시간 (시간)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3,799	21.8	36,014	693	주41.5(연2,164)
주48시간 초과 근로자	5,395	31.0	54,946	1,145	주40.4(연2,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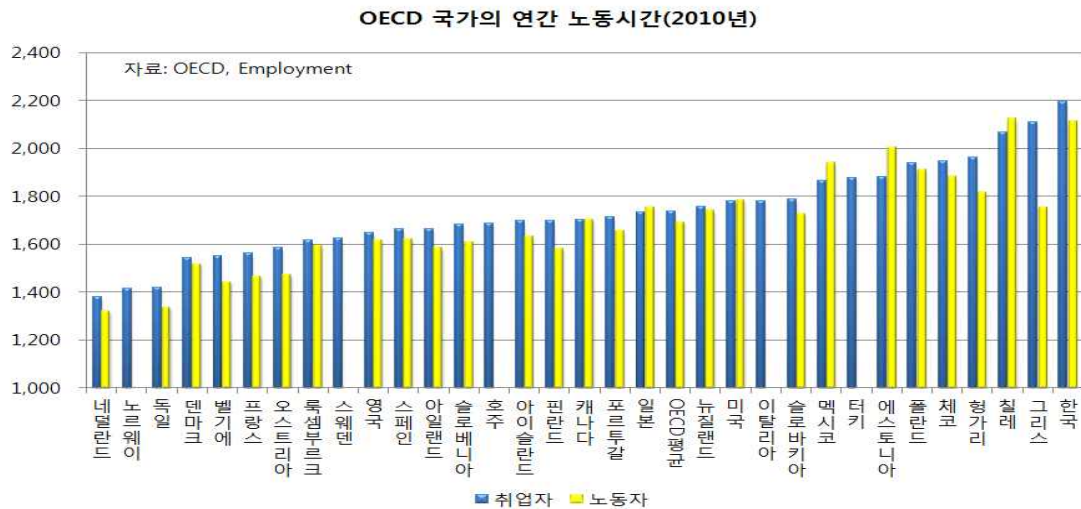
3. 기타

○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휴일휴가 사용을 늘리고, 탈법적인 교대제를 일소하고 1일 8시간 노동 기준으로 교대제를 개선해야 함.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함.

[보론] 노동시간 국제비교

○ OECD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취업자 2,193시간(노동자 2,111시간)으로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749시간으로, 한국보다 444시간(20%) 짧음.
-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09시간), 칠레(2,068시간) 세 나라뿐임.
-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1,377시간)와 노르웨이(1,414시간), 독일(1,419시간)임.



○ 하지만 OECD에 보고된 한국의 노동시간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임. 노동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0년 노동시간은 취업자 2,354시간, 노동자 2,319시간이고, 2011년 노동시간은 취업자 2,287시간, 노동자 2,246시간임.
- OECD에 보고한 2010년 노동시간 통계는 실제보다 취업자는 161시간, 노동자는 208시간 축소 보고한 것임.